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3. 2.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2002. 1월부터 총무과 소속 주민자치기획단으로 설치·운영중인 읍면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이 당초 '02.12.31까지 시한이었으나 '04. 6. 30까지 1년 6개월간 연장승인됨에 따라 『주민자치기획단』을 『주민자치과』로 전환·설치하여 읍면기능전환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주민자치과 설치(신설)에 따른

· 제3조 제1항중 건설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삽입함.

· 제3조 제2항 제2호 총무과 분장사무중

- 8) "행정구역"
- 10) "선거 및 국민투표"
- 13) "생활민원처리 및 군정순찰"
- 14) "호적 및 주민등록 업무"
- 15) "연도변 정비 및 가꾸기 사업"
- 16) "농어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
- 17) "각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 18) "통계자료의 수집 및 간행물 발간"을 삭제하고,

· 제3조 제2항 제11호 건설과 분장사무 다음에 제12호 주민자치과 분장사무을 신설함.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 지

4. 참고자료

○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등 승인(행정13101-12028, '02. 12. 6)

○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건설과 다음에 "주민자치과"를 삽입하고, 제2항 제2호 총무과 분장사무중 8)목, 10)목, 13)목 내지 18)목을 삭제하고, 제11호 건설과 분장사무 다음에 제12호 주민자치과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민자치과
 1)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2) 읍면 기능전환 업무
 3)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4) 예산, 회계, 일반서무
 5) 선거 및 국민투표
 6) 행정구역, 반상회, 적십자회비
 7) 생활민원처리 및 군정순찰
 8) 연도변 정비 및 가꾸기 사업
 9)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
 10) 주민등록 및 호적업무
 11) 주민전산망 관리 운영
 12) 각종통계 생산 및 관리
 13) 통계자료의 수집 및 간행물 발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건설과**를 둔다.	제3조(실·과의설치)① ---------- ---------- ---------- ---------- **건설과, 주민자치과**.....
② 실·과의 분장사무로 대강은 다음과 같다. 2. 총무과 1)~7)(생략) **8)행정구역** 9)(생략) **10)선거및국민투표** 11)~12)(생략) **13)생활민원처리 및 군정순찰** **~18)통계자료의수집 및 간행물발간** 19)~29)(생략)	②---------- ----------. 2. 1)~7)(현행과 같음) **〈삭제〉** 9)(현행과 같음) **〈삭제〉** 11)~12)(현행과 같음) **〈삭제〉** 19)~29)(현행과 같음)
〈신설〉	**12. 주민자치과** **1) 파소관업무의 기획 조정** **2) 읍면 기능전환 업무** **3)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4) 예산, 회계, 일반서무** **5) 선거 및 국민투표** **6) 행정구역, 반상회, 적십자회비** **7) 생활민원처리 및 군정순찰** **8) 연도변 정비 및 가꾸기 사업** **9) 농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 **10) 주민등록 및 호적업무** **11) 주민전산망 관리 운영** **12) 각종통계 생산 및 관리** **13) 통계자료의 수집 및 간행물 발간**